

## ★ 상속부과제척기간

-2014년부터 부과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개정 (2015.6월 사망자부터 부과가능함.)

## ★ 상속증간생략등기

- 경·공매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상속포기가 없으면 과세대상이므로 미신고자에 대한 사전안내 필요

※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(행안부 운영요령2020.8.12)

### <법정상속시 지분계산법 예시>

구 분	상 속 인	상 속 분	비율	구 分	상 속 인	상 속 분	비율
자녀 및 배우자 가 있는 경우	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	장남 1	2/5	자녀 및 배우자 가 있는 경우	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	장남 1	2/11
		배우자 1.5	3/5			장녀 1	2/11
	장남, 장녀, 배우자 만 있는 경우	장남 1	2/7			차남 1	2/11
		장녀 1	2/7			차녀 1	2/11
		배우자 1.5	3/7			배우자 1.5	3/11
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 만 있는 경우	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	부 1	2/7			부 1	2/7
		모 1	2/7			모 1	2/7
		배우자 1.5	3/7			배우자 1.5	3/7

## 재산세 사망자 처리 및 대장정비

6.1일 이전 사망자	과세시점대장을 <b>상속인(주된 상속자)으로 정비</b> 하여 정기분이 과세되도록 한다. 현시점은 사망자로 그대로 둔다. -건물토지대장, 과세재액대장 총괄과세 모두 상속인으로 표시된다. 6.2일 이후 신고가 들어오면 <b>현시점만 수정</b> 하고 과세시점은 그대로 둔다. 6.1일 이전 사망자는 <b>주된 상속자→상속인기준으로</b>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된다.
6.2일 이후 사망자	과세시점은 변동없으므로 과세시점대장을 사망자로 두고 정기분을 부과누락시킨다. 이후 <b>상속인(주된 상속자)을 납부자로 수시분을 과세한다.</b> [총괄-납세자관리- <b>상속자등록관리</b> ]메뉴에 상속인을 먼저 등록한 후 과세시점대장-세액계산에서 상속자분할추가 버튼으로 상속지분만큼 세액분할하여 과세한다.  6.2일 이후 사망자는 <b>사망자로 종부세가 합산된다.</b>
사망자가 7,9월 소유자가 다른 경우	상속자가 7월분을 납부하여 감액을 원하지 않을 경우 9월정기분 과세후 '총괄과세추가'처리를 해준다.